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가단1163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민
변 론 종 결 2021. 4. 22.
판 결 선 고 2021. 6. 24.

주 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8. 1. 15.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을 36,197,12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6,197,1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주문 제1항, 또는 피고와 B 사이에 2018. 1. 15.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각하고 받게 될 매매대금 중 1/2에 해당하는 335,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36,197,12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197,1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6. 2. B과, 신용보증원금을 36,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17. 6. 2.부터 2018. 6. 1.까지로 각 정하여 B의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B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B은 2017. 6. 2. C은행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B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D)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2018. 3. 31. 폐업하고 2018. 4. 17. 최종 부실처리 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12. C은행의 요구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의 연체 대출 원리금 36,197,122원을 C은행에 대위변제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17. B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차전16751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27. B에 대하여 원고에게 36,283,912원(= 대위변제금 36,197,122원 + 위약금 86,7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이는 2019. 1.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B과 그 배우자인 피고는 2013. 11.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9. C은행에 채권최고액을 36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2014. 6. 3.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채권최고액을 102,000,000원으로, 채무자를 B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2016. 10. 17.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을 195,000,000원으로,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바. B과 피고는 2018. 1. 15. F와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매매대금 67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계약금 67,000,000원, 중도금 40,000,000원, 잔금 563,00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C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 E에 대한 근저당채무는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 매도인이 상환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매매대금은 피고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사. F는 이 사건 계좌에 2018. 1. 15. 계약금 중 10,000,000원, 2018. 1. 16. 나머지 계약금 57,000,000원, 2018. 2. 28. 중도금 40,000,000원, 2018. 3. 29. 잔금 중 443,306,675원을 각 송금하였다.

아. B은 2018. 1. 15.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C은행, G 주식회사 등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은행장, H기관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B과 피고 사이에 2018. 1. 15.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또는 금전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위 각 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다.

원고가 B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8. 7. 12. C은행에 B의 연체 대출 원리금 36,197,122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36,197,122원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비록 원고가 사해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날인 2018. 1. 15. 이후에 위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나, 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2017. 6. 2.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B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D)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2018. 3. 31. 폐업하여 2018. 4. 17. 최종 부실처리되었는바, 2018. 1. 15. 당시 B의 대출금 연체로 인해 장래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18. 7. 12.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는바, 원고의 B에 대한 36,197,122원의 구상금채권은 2018. 1. 15.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또는 금전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B과 피고가 2018. 1. 15.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F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2018. 1. 15. 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B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B이 예금으로 출연하여 이를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예입하여 피고가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체결 당시 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수의 금융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B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통해 그 매매대금을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여 피고가 보유하게 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고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B은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는 경우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수탁자인 명의인이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회사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금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어 사용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반환만이 문제 되는데, 신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예금을 인출·사용하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신탁자가 수탁자의 통장과 인장, 접근매체 등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때에는 신탁자가 통상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탁자가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자가 명의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수탁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수탁자가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F가 이 사건 계좌에 2018. 1. 15. 계약금 중 10,000,000원, 2018. 1. 16. 나머지 계약금 57,000,000원, 2018. 2. 28. 중도금 40,000,000원, 2018. 3. 29. 잔금 중 443,306,675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은행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위 각 돈이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되거나 이 사건 계좌상의 마이너스대출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수탁자인 피고가 C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인 B에게 양도하고 C은행에 양도통지를 하는 방법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고, 가액반환만이 문제된다.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1/2 지분의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예금이 모두 소비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신탁자인 B가 수탁자인 피고의 이 사건 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예금 중에서 B가 소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피고가 소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상당액을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 하여야 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은행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 1. 15.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송금된 10,000,000원(B의 몫은 5,000,000원이다)은 그 입금과 동시에 피고의 이 사건 계좌상의 마이너스대출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사실, 2018. 1. 16.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나머지 계약금으로 송금된 57,000,000원(B의 몫은 28,500,000원이다) 중 28,887,895원은 그 입금과 동시에 피고의 이 사건 계좌상의 마이너스대출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고, 같은 날 나머지 28,112,105원(= 57,000,000원 - 28,887,895원) 중 20,000,000원이 인출되었으며, 나머지 8,112,105원(= 28,112,105원 - 20,000,000원)과 같은 날 I가 입금한 10,000,000원이 같은 날 B에게 모두 송금된 사실, 2018. 2. 28.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으로 송금된 40,000,000원(B의 몫은 20,000,000원이다)이 피고의 E에 대한 근저당채무의 변제로 모두 사용된 사실, 2018. 3. 29.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으로 송금된 443,306,675원(B의 몫은

221,653,337.5원이다)이 C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에 대한 근저당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2018. 1. 15. 이 사건 계좌에 B의 몫으로 입금된 계약금 5,000,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피고의 마이너스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소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2018. 1. 16. 이 사건 계좌에 B의 몫으로 입금된 나머지 계약금 28,500,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같은 날 계약금으로 입금된 총 57,000,000원 중에서 같은 날 인출된 20,000,000원을 B가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20,000,000원은 피고가 소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57,000,000원 중 28,887,895원은 그 입금과 동시에 피고의 마이너스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으므로, 위 28,887,895원도 피고가 소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57,000,000원 중 나머지 8,112,105원은 B에게 송금되었으므로, B가 이를 소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 57,000,000원 중 B의 몫인 28,500,000원에서 20,387,895원(= 28,500,000원 - 8,112,105원)을 피고가 소비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2018. 2. 28. 이 사건 계좌에 B의 몫으로 입금된 중도금 20,000,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같은 날 중도금으로 입금된 총 40,000,000원이 피고의 E에 대한 근저당채무의 변제로 모두 사용되었으므로, 위 20,000,000원은 피고가 소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계약금, 중도금 중 피고가 소비한 돈이 45,387,895원(= 5,000,000원 + 20,387,895원 + 20,000,000원)에 달하고,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36,197,122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으로 입금된 돈을 누가 인출하여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이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36,197,12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는 수익자로서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6,197,1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가액배상)을 명하는

이상 원고가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는 증여계약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가액배상)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훈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114.8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 69327.4㎡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 69327.4분의 60.25

끝.

